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6. 22.

行 政 委 員 會
專門委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43호로 2021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과 사업 변경·폐지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

-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 신설(별표의 제47호)
- 2)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사무 삭제(별표의 제16호)

나. 사업변경 및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 1)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명 변경 및 근거법령 정비(별표의 제22호)
- 2)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 및 신청접수에 관한 사무 삭제(별표의 제2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구청장 권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사업 변경 및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명과 근거법령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제47호에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8.18. 개정, 2021.6.1. 시행)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이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제공으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을 도모하고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임대차신고제 주요 내용

- 1)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
- 2)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3)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 신고금액: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4) 신고관청: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 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 5) 위반시 제재 : 미신고 및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 별표 제16호 【의료보호증 재확인 사용 사무】는 「의료급여법」 제8조 전문 개정으로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업무가 폐지되었고, 제24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 및 신청접수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사업 폐지에 따라 조례상 사무를 삭제 하였습니다.
- 안 별표 제22호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 신청접수에 관한 사무】는 「기초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무명을 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동장에게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그 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 사항을 반영·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급여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하 “의료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권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의료급여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